

서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 제11호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팔호안의 “위험물 취급소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 (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) 영 제65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일반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	제29조 (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).....
1 ~ 10 (생 략)	1~10 (현행과 같음)
11. 위험물 저장및처리 시설 (위험물 취급소, 충전소 및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 한다.)	11. (충 전소 및 지하에 위 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한한다.)
12 ~ 16 (생 략)	12~16(현행과 같음)

서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수리정비및” 다음에 “원활한 부품공 급과”를 삽입한다.

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회수리시 또는 지도소 내방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.

⑤ 기존 농기계 부품센터는 순회수리반에 흡수 함께 운영하므로써 농민에 대한 편의 도모에 기여한다.

제8조 제목중 “수리용부품비치등”을 “수리용 부품비치 및 확보”로 한다.

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부품확보는 정부 보급 기종으로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위주로 확보하되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, 내구성, 회귀성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